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자 및 민원인과 연관된 규제 개선 및 기술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근거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안 제13조)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분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유예대상과 그 기간을 명확화하는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 정비(안 제14조)

1)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 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대상자 중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다. 사설항로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 정비(안 제22조)

1) 내수면, 영해수역 등으로 제한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설항로표지 관련 허가·신고수리 업무 위임권한을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포함한 전 해역으로 확대하여 민원 신속처리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산되어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및 서비스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장비·시설 기준 현행화 및 명확화(안 별표 1)

1) 선박 보유·규모 제한, 미사용 중인 구식장비, 설치 위치 구분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확보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신규 장비용품 도입에 따른 등명기 예비품 보유 근거를 명확히하고, 목적과 색상 구분없이 불필요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부표 및 등부표의 보유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마. 사업자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면적 제한 완화(시행령 별표 2,3)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품 종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합한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실의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의 확보 방식을 명확히하고, 교육인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비규제

대통령령 제 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2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6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2에 따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6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제14조제1항 중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를 “한다) 중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지상파항법시스템과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

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지상파항법시스템과 법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로표지의 설치위치 및 기(基)수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가. 항로표지가 10기 미만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보할 것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항로표지가 10기 이상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보할 것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 제1호가목 항로표지의 설치위치 및 기(基)수란 중 “육상”을 “항로표지가 10기 미만인 경우”로 한다.

별표 1 제1호 항로표지의 설치위치 및 기(基)수란 중 “나. 해상(항로표지

의 일부가 육상에 함께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와 “1) 항로표지가 10기 미만인 경우”, “2) 항로표지가 10기 이상인 경우”를 “나. 항로표지가 10기 미만인 경우”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사설항로표지관리원란 중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보할 것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해양자료수집용 표지’의 경우, 등부표 또는 부표의 확보는 제외한다.

9. ‘일체형등명기’를 사용하는 경우 축전지 또는 태양전지 등 부속되는 장비는 확보된 것으로 보며, 등명기의 설치수량은 ‘일체형등명기’와 ‘일반 등명기’를 구분하여 산출한다.

10. 설치된 등부표 또는 부표의 색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색상 구분 없이 총 설치기수에 따른 예비품을 확보하면 된다.

별표 1 제3호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로	시설	
	장비실	측정시설

표지의 설치 기수		[항로표지가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항로표지의 일부가 육상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가. 5기 이하	해당 없음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DGNSS)수신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6기 이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충전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별표 1 제3호 시설란 중 “충전실(충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장비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 충전실란 중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충전실”을 “예비품 보관 등을 위한 별도의 장비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시설란 중 “선박 및 측정시설[항로표지가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항로표지의 일부가 육상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와 “선박”, “측정시설”을 “측정시설[항로표지가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항로표지의 일부가 육상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나목 측정시설[항로표지가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항로표지의 일부가 육상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란 중 “2톤 이상의 항로표지 점검·정비용 선박을 1척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과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육분의(六分儀, 두 점 사이의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광학기계를 말한다)·삼간분도기(三杆分度器) 및 해

도(海圖) 등의 측량기기를 확보할 것”을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나목 중 “충전실”을 “장비실”로 하고, 같은 목 등록기준란 중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충전실(충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예비품 보관 등을 위한 별도의 장비실”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가목 지정기준란 중 “이상일 것”을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지정기준란 중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을 “실습실을 1개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 및 실습실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2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6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2에 따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6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

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 법 제23조제1항----- ---------- ---------- ---------- 한다) 중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지상파항법시스템과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9조제6항---------- ---------- ---------- ----------. <단서 삭제>
가. 새로 건설한 항만 또는 부두에 선박이 입항·출항하	<삭 제>

는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나. 기존의 항만 또는 부두에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로를 변경하기 위한 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삭 제>
5.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5. 법 제13조제1항---------- ---------- ---------- ---------- ---------- -----
6.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6. 법 제14조제1항---------- ---------- ---------- ----------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접수	14. 법 제19조제2항--------- ---------- ---------- ----------
15. ~ 32. (생 략)	15. ~ 32.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	② ---------- ---------- ---------- ---------. ----------

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1. ~ 10. (생 략)	---------- ---------- 지상파항법시스템과 법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 1. ~ 10. (현행과 같음)